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2023. 1.



차 례 CONTENTS

I.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1
1. 추진배경	1
2. 사업목적	1
3. 근거	1
4. 시범사업 개요	2
II. 추진체계 및 운영	6
1. 수행 주체별 역할	6
2. 추진절차도	7
III.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8
1. 요양급여 기준	8
2. 산정지침	9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14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5

차례 CONTENTS

IV.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21
1. 정보시스템 접속	22
2. 대상자 등록 및 조회	22
3. 점검서식 작성 및 세부 방법	24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30
5. 공지사항	30
V.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31
VI. 시범사업 효과평가	34
 [별지 서식] 제1호~제7호	37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48

I.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1 추진배경

가. 재택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한 대응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가 집에서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환자 관리가 어려운 상황

나.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개선 필요

- 환자는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의료적 관리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 등 위험부담 존재하여 관리 부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사업목적

가. 재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삶의 질 제고

나.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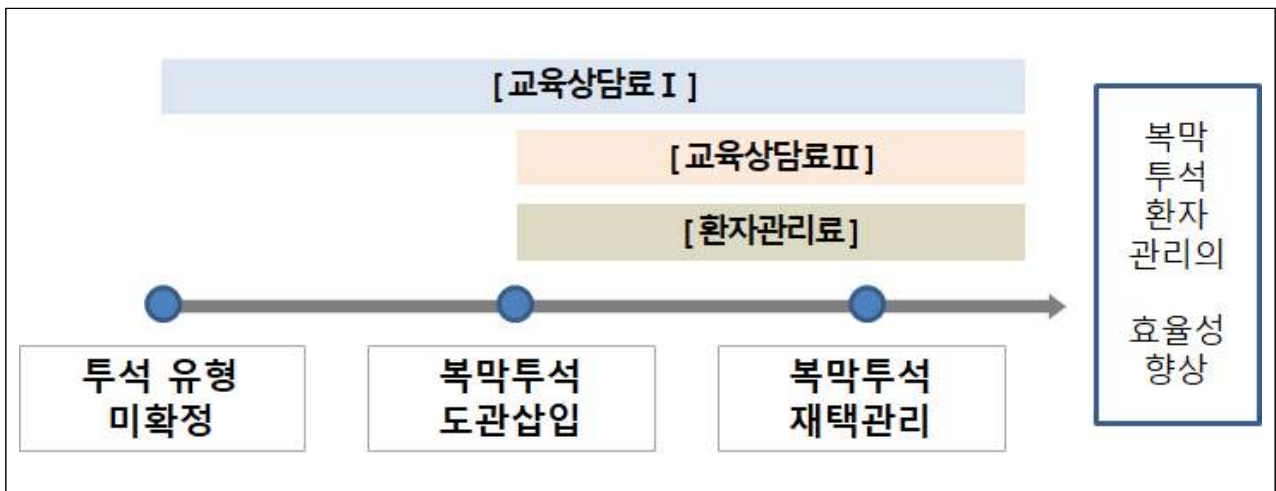
3 근거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범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의료인의 방문은 불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재택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



[그림]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념도

나. 사업대상

- 1) (대상 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2) (대상자)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질병코드: N18.5) 환자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다. 서비스 제공 인력

1) 서비스 인력 구성

- 서비스 제공 인력은 복막투석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교육·상담 I·II,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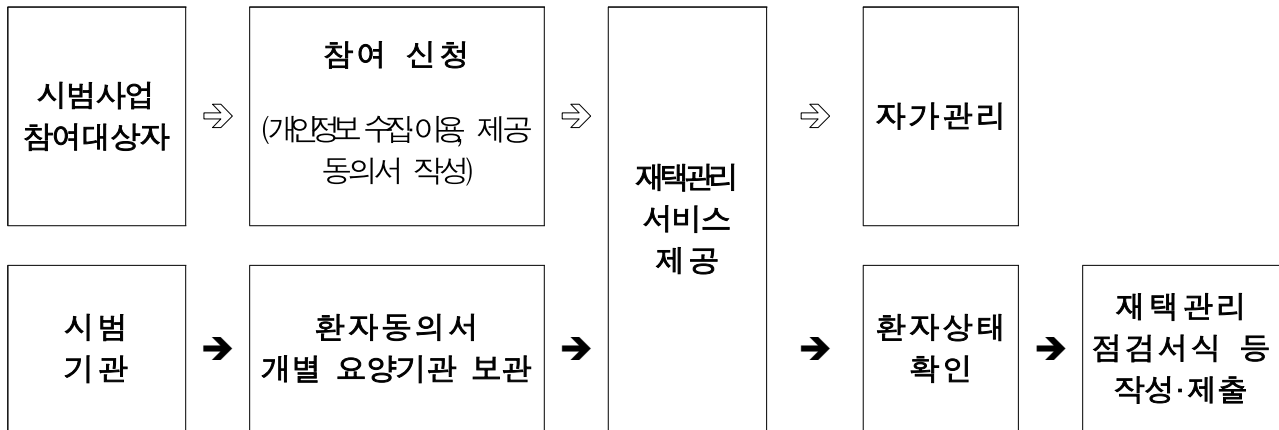
2) 서비스 인력 자격

-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를 말한다.
- 간호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 타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인력현황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현황신고·변경]에서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완료 후 인력현황신고
-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 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신규신고> 병동구분-특수> 병동코드-복막투석 재택관리팀
- 의사, 간호사 인력신고
 - (의사) 인력현황→의(약/조산)사 신고→근무병동→복막투석 재택관리팀 등록
 - * 중복등재 가능하며 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가능
 - (간호사) 인력현황→간호인력 신고→근무병동→복막투석 재택관리팀 등록
 - * 간호인력 중복등재를 원하는 경우 병동변경내역을 신고한 후, 최종제출-포털전달사항에 중복등재 사항에 대해 입력해야 함

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절차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자세한 방법은 IV.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정보시스템(p.21~p.30) 참고

마.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내용

- **(교육상담료 I)**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 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시 산정(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 ※ 의사가 실시하는 교육상담료 I의 경우 투석 유형의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산정 가능
- **(교육상담료 II)**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
- **(환자관리료)**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 후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산정

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점검서식

- (자료제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를 제공한 후에는 진료내용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 2호, 3호 서식]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점검서식”을 작성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에 제출

사. 시범사업 참여 안내

- 시범기관은 당해 기관이 사업 참여기관인 점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에 대한 안내, 환자 본인 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의료기관 입구, 진료비 수납 창구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

아. 시범사업 기간

- '19.12.16.부터 '25.12.31.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Ⅱ. 추진체계 및 운영

1 수행 주체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시범사업 운영 지침·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다. 시범사업 협의체

- (구성) 보건복지부, 심평원, 관련 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역할) 시범사업 추진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라. 시범사업 참여기관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점검서식 제출 및 비용 청구 등
- 시범사업 안내 및 제공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2

추진 절차도

단계	사업절차	주관기관
시범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및 접수	보건복지부, 심평원
필요 시		
	시범사업 추진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시범사업 협의체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등록	시범사업 등록	심평원
시범사업 수행	대상 환자 시범사업 참여 신청(환자등록)	시범사업 참여기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료제출 및 급여비용 청구·지급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점검서식 등 제출	시범사업 참여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범사업 참여기관
	요양급여비용 지급	공단
사업평가	사업추진 결과 및 실적보고	심평원
	시범사업 효과평가	보건복지부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2) 급여비용의 부담

- 본 지침 'Ⅲ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의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100분의 10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특정 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

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이하 '재택관리료')

- 1) 재택관리료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록한 환자에게 재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환자 관리료를 말한다.
 - 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의 교육상담료 I과 환자관리료는 외래에서, 교육상담료 II는 입원·외래에서 산정한다.
 - 4)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을 및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 (정보시스템 접속경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시범사업 서식관리→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6)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 외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 7)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의 세부항목은 연간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나. 교육상담료

- 1) 교육상담료는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질병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교육상담료Ⅰ’은 의사가 외래에서 1인의 환자를 1대1로 회당 최소 15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1일 1회 이내로 초기 연도 연 4회 이내, 차기 연도부터 연 2회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 교육상담료Ⅰ 산정 시 초기 연도 연 4회 이내에는 투석유형의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산정횟수 연 2회 이내를 포함한다.
- 3) ‘교육상담료Ⅰ’의 실시인력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를 말한다.
- 4) ‘교육상담료Ⅱ’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입원 및 외래에서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해 1인의 환자를 1대1로 회당 최소 2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1일 1회 이내로 초기 연도 연 6회 이내, 차기 연도부터 연 4회 이내로 산정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 5) ‘교육상담료Ⅱ’의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를 말하며, 간호사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 환자관리료

- 1) 환자관리료는 진료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질환관리 서비스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업무 등을 포함한 전화, 문자 등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원칙적으로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을 말함

- (가) 자동복막투석의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자동 전송되고 이를 의료진이 확인 가능한 경우

- (1) 의료진은 주 3회 이상 환자의 이상징후 발생 유무 등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환자에게 정보제공, 내원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 (2) 이상징후 점검 등을 위한 기준은 대한신장학회에서 제시하는 임상수치 등 기준에 따른다.
- (3) 의료진은 환자상태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월 1회 이상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환자에게 복막투석 관리서비스(양방향 의사소통)를 실시한다.
- (4) 의료진은 환자의 이상징후 발생 유무,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 서비스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를 월 1회 작성한다.

- (나) 전자적 방식으로 투석 데이터가 의료진에게 자동 전송되지 않는 경우

- (1) 의료진은 환자가 임상수치 기록 등 자가관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인지 시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히 안내한다.
- (2) 의료진은 월 2회 이상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환자에게 복막투석 관리서비스(양방향 의사소통)를 실시한다.

- (3) 의료진은 환자의 이상징후 발생유무,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서비스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를 월 1회 작성한다.
- 2) '환자관리료' 실시인력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를 말하며, 간호사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사업 세부모형〉

구분	교육상담료	
세부구분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실시인력	의사	의사 또는 간호사
교육내용	전문적·심층적 교육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실시횟수 및 시간	초기 연도 연 4회 이내 차기 연도 연 2회 이내 (매회 15분 이상)	초기 연도 연 6회 이내 차기 연도 연 4회 이내 (매회 20분 이상)
수 가 ('23년 기준)	41,190원 환자 본인부담률 10% 적용	25,950원 환자 본인부담률 10% 적용
구분	환자관리료	
실시인력	의사 또는 간호사	
환자관리 서비스	· 임상수치 등 확인: 체중, 평균 제수량 등 · 환자상태확인: 투석액 주입 및 배액상태, 복막투석을 위한 위생 및 환경, 도관관리 등 · 서비스 제공: 체중/제수량 측정방법, 식이운동요법, 손투석/기기투석 등 방법 및 주의사항 교육,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 정보시스템 입력: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mc/) ※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전화, 문자 등)으로 환자 임상 정보 수치를 확인하고,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	
실시횟수	복막투석 방법에 따라 (비자동) 월 2회 이상, (자동) 주 3회 이상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	
수 가 ('23년 기준)	27,840원 환자 본인부담 면제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병원 점수당 단가: '23년 79.7원 기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23년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		
	IB510	가. 교육상담료		
	-IB511	(1) 교육상담료 I 주.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한다.	516.82	41,190
	IB520	(2) 교육상담료 II	325.63	25,950
	IB530	나. 환자관리료	349.26	27,840

4 | 영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영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가. 청구원칙

- 1) (영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로 영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2) (청구 시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영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 3)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과 비 시범사업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 4) (명세서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내역)과 비 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의과 영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 작성한다.
- 5) (특정내역 기재)
 - 가)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6”(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대상)을 기재하여 청구한다.
 -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본 시범사업 특정기호(S016)와 같이 기재하여 청구한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1) 일반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일수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입원일수, 총내원일수	☐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다만,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한다.

2) 상병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면허종류, 면허번호	☐ 명세서 상병내역에는 시행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상병분류기호	☐ 통계청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 - 시범사업 명세서는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에 만성 신장병 5기(질병코드 N18.5) 기재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의 경우 내원한 일자를 기재한다. - 환자관리료의 경우 환자별 마지막 환자관리를 실시·기록한 일자에 산정한다. ☐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분리 청구 시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하여 청구한다. 다만, 연속된 날짜에 시행한 교육상담료II의 경우 최초 교육상담을 실시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기재한다.

3) 명세서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 (진료내역)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하고, 명세서 상병내역 및 진료내역(줄단위)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시행 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 (특정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6’ 을 기재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한다.

항목	세부작성요령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특정기호 “S016”을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 I)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복막투석 환자에게 의사가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 초기 연도 연 4회 이내, 차기 연도 2회 이내 산정																													
	(예시1) ‘교육상담료 I’을 청구하는 경우																													
	<table><tr><th>항</th><th>목</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h>면허종류</th><th>면허번호</th></tr><tr><td>01</td><td>03</td><td>1</td><td>IB510</td><td>41,190</td><td>1</td><td>1</td><td>41,190</td><td>1</td><td>12345</td></tr></table>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3	1	IB510	41,190	1	1	41,190	1	12345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3	1	IB510	41,190	1	1	41,190	1	12345																					
<table><tr><th colspan="10">특정내역기재란</th></tr><tr><th colspan="3">발생단위구분</th><th colspan="3">줄번호</th><th colspan="2">특정내역구분</th><th colspan="2">특정내역</th></tr><tr><td colspan="3">1</td><td colspan="3"></td><td colspan="2">MT002</td><td colspan="2">S016</td></tr></table>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6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6																						

항목

세부작성요령

(예시2)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교육상담료 I’을 청구하는 경우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3	1	IB510	41,190	1	1	41,190	1	1234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6	
1						MT002		V193	
1						MT014*		0117123***	

*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산정특례등록번호(10자리)를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에 기재

☐ (교육상담료Ⅱ)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복막투석 환자에게 의사 또는 간호사가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 초기 연도 연 6회 이내, 차기 연도 4회 이내 산정

(예시1) 의사가 시행한 ‘교육상담료Ⅱ’를 청구하는 경우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3	1	IB520	25,950	1	1	25,950	1	1234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6	

(예시2) 간호사가 시행한 ‘교육상담료Ⅱ’를 청구하는 경우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3	1	IB520	25,950	1	1	25,950	6	23456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6	

항목

세부작성요령

□ (환자관리료)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복막투석 환자에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예시1) 의사가 시행한 ‘환자관리료’를 청구하는 경우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3	1	IB530	27,840	1	1	27,840	1	1234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6	

(예시2) 간호사가 시행한 ‘환자관리료’를 청구하는 경우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3	1	IB530	27,840	1	1	27,840	6	23456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6	

4)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2	특정기호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S016”을 기재 ◆ 기재형식: X(4) ◆ (예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16

다.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보완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평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2) 추가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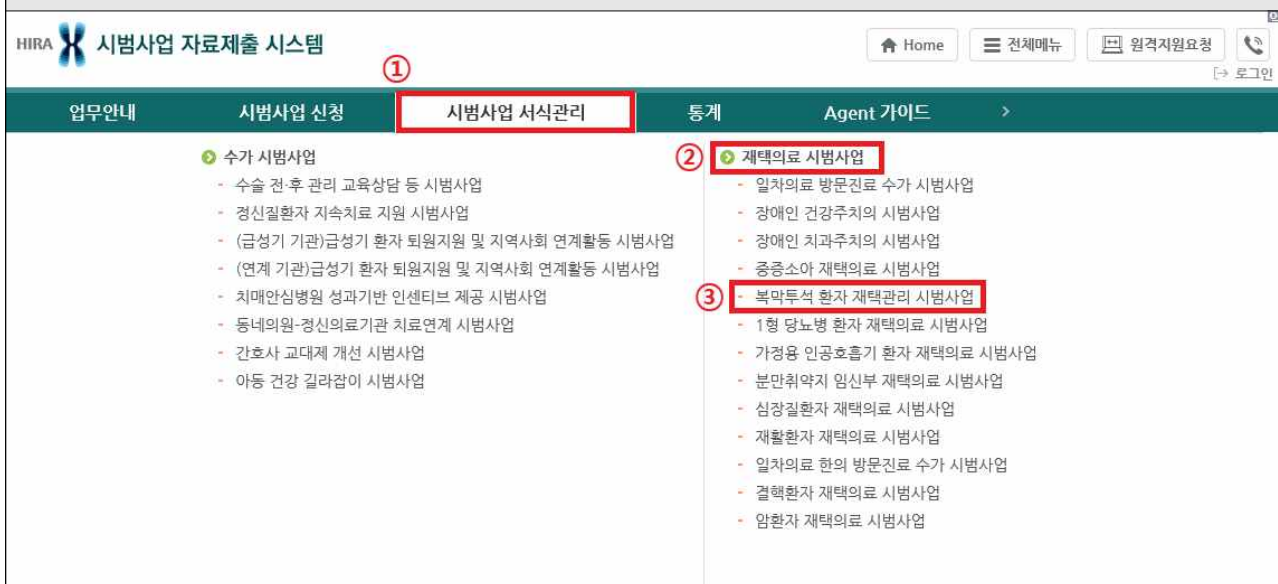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3) 보완 · 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IV.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1 정보시스템 접속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서식관리]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선택

나.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서식관리]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선택

※ Chrome을 통한 접속 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

2 대상자 등록 및 조회

- **대상자등록** 을 클릭하여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하여야, 대상자 등록 내역 확인 및 점검서식 작성 가능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서식관리 | 통계 | Agent 가이드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시범사업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등록일자: 2019-12-16 ~ 환자이름: 수진자 일련번호: **Q 조회**

대상자 조회 | **대상자일괄등록** | **대상자등록** | 엑셀다운 (총 81 건)

연번	수진자 정보			1차년도		2차년도	
	수진자일련번호	환자명	등록일자	생년월일	성별	교육상당 I	교육상당 II
1							

가. 대상자 등록

- **대상자등록** 클릭 시, 대상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대상자 등록

1. 대상자 정보

* 주인등록번호

* 성명

* 등록일자

* [별지 제6호 서식]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저장 | 닫기

- 개별 건 등록 시, **대상자등록** 버튼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환자성명, 등록일자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수(○○○○○○○○ - ○○○○○○○○○) 입력
 - (성명) 대상자의 이름을 공백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숫자나 특수기호 등은 입력 불가능
 - (등록일자) 연월일(yyyy-mm-dd)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 등록일자: [별지 제6호 서식]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대상자 일괄 등록 시, **서식다운로드** 및 **대상자 업로드** 버튼 활용
 - **서식다운로드** 시 엑셀서식 내에는 대상자 성명, 등록일자,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기재하여 업로드 가능

나. 대상자 조회

- 해당 조건별로 입력 후,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 제출완료 된 점검서식의 횟수가 표기되며, 숫자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

다. 대상자 삭제

- 최종 제출된 서식이 없는 경우 삭제 가능하며, **삭제** 버튼 클릭 시 삭제 가능

3 점검서식 작성 및 세부 방법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연번	수검자일련번호	환자명	등록일자	생년월일	성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환자관리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환자관리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환자관리
1	2022000000	이복막	2022-08-10	1975-12-19	남	2	1	1	0	0	0	0	0	0

가. 점검서식 조회 및 신규작성

- 해당 조건별 입력 후,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 대상자별 제출 완료된 점검서식 횟수 조회 가능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서식별 작성 가능 횟수를 충족한 경우, 해당란이 비활성화 되며 추가 서식 작성 불가능
-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은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화면(p.30)에서 조회·수정 및 최종 제출 가능
 - **최종제출** 버튼 클릭 시 수정 불가
- 제출서식 엑셀업로드를 원하는 경우,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화면(p.30)에서 가능
 - **엑셀업로드** 클릭 > 제출서식 선택 > **엑셀다운로드** 클릭 > 다운받은 엑셀 양식에 해당 내용 입력 > 제출서식 선택 > **엑셀업로드** 클릭 > **저장**
 -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나. 교육상담료 I 점검서 작성 요령

교육상담 I		* 임시 저장 후 최종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식작성이 완료되면 임시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	목록
A. 대상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일자	

○ A. 대상자 정보

- A1~3. 등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가 자동생성됨(수정불가)

B. 교육 관련 사항					
1. 교육일자					
2. 교육자정보	2-1. 직종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자격번호				
3. 교육시기	☐ 투석유형 미확정 ☐ 투석유형 확정 (복막투석 도관삽입)				
4. 교육회차	초기 연도 ☐ 1회 ☐ 2회 ☐ 3회 ☐ 4회 차기 연도 ☐ 1회 ☐ 2회				
5. 교육 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6. 교육상담내용	☐ 만성신장병 및 말기신장병에 대한 이해 ☐ 신대체요법 종류 및 방법 ☐ 복막투석에 대한 이해: 원리 및 방법 ☐ 복막투석 관리 전반: 약물(투석액 및 기타 처방 약제) 관련 교육, 투석액 교환, 도관, 수분, 염분, 전해질, 체중 등 ☐ 복막투석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7. 교육자료 (리플렛, 슬라이드, 동영상 등) 제공여부	☐ 제공 ☐ 미 제공				
8. 교육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B. 교육 관련 사항

- B1. 실제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 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B2.  버튼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인력이 조회되며, 그 중 교육·상담을 시행한 의사 선택
- B3. 투석유형의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시 투석유형 미확정(IB511), 복막투석 도관을 삽입한 경우 투석유형 확정(IB510) 선택
- B4. 해당 교육실시 회차 선택
- B5. 교육상담을 제공한 대상을 선택
- B6. 시행한 교육상담의 내용을 모두 선택(중복가능)
- B7. 교육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해당 항목 선택
- B8. 교육상담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교육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 점검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 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다. 교육상담료 II 점검서식 작성 요령

교육상담 II		* 임시 저장 후 최종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식작성이 완료되면 임시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	목록
A. 대상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일자	
4. 입원·외래 구분	☐ 입원 ☐ 외래				

○ A. 대상자 정보

- A1~3. 등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가 자동생성됨(수정불가)
- A4. 입원 및 외래 구분하여 체크

B. 복막투석 유형	
1. 복막투석 유형	☐ 비자동투석(손투석) ☐ 자동복막투석 (모뎀장착 : ☐ 유 ☐ 무)

○ B. 복막투석 유형

- B1. 비자동투석(손투석) 또는 자동복막투석 선택 후 자동복막투석 유형일 경우 모뎀장착 여부 체크

C. 교육 관련 사항			
1. 교육일자	- -		
2. 교육자 정보	2-1. 직종	☐ 의사 ☐ 간호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자격번호
	Q		
3. 교육회차	초기 연도		차기 연도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1회 ☐ 2회 ☐ 3회 ☐ 4회

○ C. 교육 관련 사항

- C1. 실제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C2-1. 교육을 시행한 '의사' 또는 '간호사' 선택
- C2-2. **Q**버튼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인력이 조회되며, 그 중 교육·상담을 시행한 의사 또는 간호사 선택
- C3. 해당 교육실시 회차 선택

4. 교육 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5. 교육상담 내용	☐ 말기신장병에 대한 이해 ☐ 복막투석에 대한 이해: 원리 및 방법 ☐ 복막투석 관리 상세: 투석액 교환방법, 도관관리(소독/기능 확인), 수분, 염분, 전해질, 체중관리, 합병증 예방, 합병증 인지/발견 방법 ☐ 일상생활관리(운동, 목욕 등) ☐ 식이/영양관리 ☐ 복약지도
6. 교육자료 (리플렛, 슬라이드, 동영상 등) 제공여부	☐ 제공 ☐ 미 제공
7. 교육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C4. 교육상담을 제공한 대상을 선택
- C5. 시행한 교육상담의 내용을 모두 선택(중복가능)
- C6. 교육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항목 선택
- C7. 교육상담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교육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 점검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 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라.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작성 요령

환자관리			
* 임시 저장 후 최종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식작성이 완료되면 임시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 목록			
A. 대상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일자	

○ A. 대상자 정보

- A1~3. 등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가 자동생성됨(수정불가)

B. 복막투석 유형	
1. 복막투석 유형	☐ 비자동투석(손투석) ☐ 자동복막투석 (모뎀 장착 : ☐ 유 ☐ 무)

○ B. 복막투석 유형

- B1. 비자동투석(손투석) 또는 자동복막투석 선택 후 자동복막투석 유형일 경우 모뎀장착 여부 체크

C. 점검사항			
1. 시행일자			
2. 교육자정보	2-1. 직종	☐ 의사 ☐ 간호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자격번호
3. 관리방법	☐ 전화 ☐ 문자		
4. 관리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이상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이상		
5. 관리제공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 C. 점검사항

- C1. 실제 환자관리를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C2-1. 환자관리를 시행한 '의사' 또는 '간호사' 선택
- C2-2. 🔍버튼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인력이 조회되며, 그 중 교육·상담을 시행한 의사 또는 간호사 선택
- C3. 환자관리에 이용한 관리방법 선택
- C4. 환자관리를 실시한 횟수 선택
 - ※ 자동복막투석(모뎀: 유) - 주 3회 이상 데이터 확인 및 월 1회 이상 관리서비스 실시
 - 손투석 또는 자동복막투석(모뎀: 무) - 월 2회 이상 관리서비스 실시
- C5. 환자관리를 제공한 대상을 선택

6. 관리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7. 임상정보	체중 (kg)	
	평균 제수량 (cc)	
	특이사항 ()	
8. 복막투석을 위한 위생 및 환경관리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양호 ☐ 이상 ☐ 특이사항	
9. 투석, 도관 관리 및 환자 상태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1) 투석액 주입상태	☐ 양호 ☐ 저류시간 부족 ☐ 특이사항
	2) 투석액 배액 상태	☐ 양호 ☐ 제수량 부족 ☐ 특이사항
	3) 투석액 상태	☐ 양호 ☐ 이상 ☐ 특이사항
	4) 도관 부위 이상 여부	☐ 양호 ☐ 발적 ☐ 진물 ☐ 특이사항
	5) 환자 상태	☐ 호흡곤란 ☐ 변비 ☐ 소변량 감소 ☐ 수면장애 ☐ 복통 ☐ 부종 ☐ 소양증 ☐ 오심/구토
10. 서비스 제공 내용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1) 질병에 대한 포괄적 관리 ☐ 2) 체중/제수량 수치와 측정방법 관리 ☐ 3) 식이관리 ☐ 4) 운동요법 ☐ 5) 합병증 예방관리 ☐ 6) 기기 사용법/비자동투석방법(손투석) 및 주의사항 ☐ 7) 복약지도	
11. 보고(의사)	☐ 유 ☐ 무	
12. 내원지시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외래 ☐ 응급실 ☐ 없음 ☐ 기타	
13. 환자 순응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14. 기타 기재 사항	(Text 입력, 1달간의 환자관리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바랍니다.)	

- C6. 환자관리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관리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 C7. '체중', 평균 제수량을 작성 후 특이사항 기재
- C8. '양호' 또는 '이상'을 체크 후 특이사항 기재
- C9-1~5 항목 해당항목에 모두 체크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작성
- C10.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을 모두 선택(중복 가능)
- C11. 의사에게 보고 유무에 대해 선택
- C12.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하되, 기타 내역이 있는 경우 기타 체크 후 직접 작성
- C13. 환자 순응도에 알맞게 체크
- C14. 기타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필수 아님)

⇒ 점검보고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 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인쇄 ▶ ▶ ▶

시범사업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서식명 전체 제출여부 전체

환자성명 시행일자 2019-12-16 ~ 2022-12-02 회차

의료진성명 면허번호 Q 조회

서비스 제공 목록 조회 ※ 작성 중인 경우에만 점검서식을 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엑셀업로드 엑셀저장 (총 68 건)

연번	서식명	수진자일련번호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록일자	수가코드	수가코드금액	의료진직종	의료진성명	의료진면허번호	시행일자	차수년도	교육회차	제출상태	최종제출
1	교육상담 I	202202140003	1	테스트	571011	여	2020-05-01	IB510	39,380	의사	최		2022-09-01	3	1	작성중	최종제출
2	교육상담 I	202208100001	1	테스트	891103	남	2022-08-10	IB511	39,380	의사	최		2022-08-10	1	1	최종제출	
3	교육상담 II	202208100001	1	테스트	891103	남	2022-08-10	IB520	24,810	의사			2022-08-10	1		작성중	최종제출
4	환자관리	202110070002	8	테스트	830215	여	2021-09-23	IB530	26,610	간호사			2022-04-15	1		작성중	최종제출
5	교육상담 I	202202140003	4	테스트	571011	여	2020-05-01	IB510	39,380	의사	테스트		2022-02-01	2	2	작성중	최종제출
6	교육상담 I	202202140003	3	테스트	571011	여	2020-05-01	IB510	39,380	의사	테스트		2022-02-01	2	2	작성중	최종제출

가. 해당 조건별로 입력 후, Q 조회 클릭 시 조회 가능

나. 대상자 조회 내역에서 '최종제출' 혹은 '작성중'으로 점검서식 제출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점검서식 제출 시 순차적으로 번호가 부여

다. 제출상태가 '작성중'인 경우, 해당 줄을 더블 클릭 시 서식내용 확인·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화면'으로 이동

라. 제출 상태가 '최종제출'인 경우, 수정 및 삭제 불가

5 공지사항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상단 [시범사업 서식관리]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공지사항] 선택하여 확인

V.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1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및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당해 기관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의료기관 입구, 진료비 수납 창구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가.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문서, 전자적 기록 등의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모니터링, 사업평가, 설문조사(만족도·요구도)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황신고

1) 신고 방법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인력 등 현황 제출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따른 인력현황은 보건 의료 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시범 수가와 관련하여 소속된 의사, 간호사 인력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지체 없이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 및 소속 의료진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5 제재조치 등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공단 및 심평원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계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VI. 시범사업 효과평가

1 평가 주체

- 시범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관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

2 평가 내용

- (서비스 내용) 수가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내용
- (대상환자) 의료적 필요성, 환자 본인부담 등
- (시범사업 평가) 운영 현황 분석,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 및 건강보험 지원체계의 종합적 평가
- (기타) 그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평가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자료, 진료기록, 요양기관별 소요비용 자료 (비급여 포함), 요양기관 제출 점검서식 등을 분석
-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환자관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용 등에 대해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시행
- 교육상담 현황 및 환자 관리 방법 등에 대한 파악 필요시 시범 기관 방문

4 평가 시기

- 시범사업 기간 중 실시내용을 토대로 하되, 평가시기 및 기간 등은 일부 변동 가능

5 | 평가 관련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평가 등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관련 점검 자료,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상담료I 점검서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상담료II 점검서

[별지 제3호 서식]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6호 서식]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환자용)

[별지 제7호 서식]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자용)

[별지 제1호 서식]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해당 항목에 ☒ 표기 및 내용 기입 ※ ○: 선택,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추가입력 필요
교육상담료 I 점검서	

A. 대상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일자
B. 교육 관련 사항				
1. 교육일자	년 월 일			
2. 교육자정보	2-1. 직종	● 의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자격번호	
3. 교육시기	○ 투석유형 미확정 ○ 투석유형 확정 (복막투석 도관삽입)			
4. 교육회차	초기 연도			차기 연도
	○ 1회 ○ 2회 ○ 3회 ○ 4회			○ 1회 ○ 2회
5. 교육 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6. 교육상담 내용	☐ 만성신장병 및 말기신장병에 대한 이해 ☐ 신대체요법 종류 및 방법 ☐ 복막투석에 대한 이해: 원리 및 방법 ☐ 복막투석 관리 전반: 약물(투석액 및 기타 처방 약제) 관련 교육, 투석액교환, 도관, 수분, 염분, 전해질, 체중, 등 ☐ 복막투석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7. 교육자료 (리플렛, 슬라이드, 동영상 등) 제공 여부	○ 제공 ○ 미 제공			
8. 교육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별지 제2호 서식]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해당 항목에 ☑표기 및 내용 기입 ※ ○: 선택,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추가입력 필요
교육상담료 II 점검서	

A. 대상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일자	
4. 입원·외래구분	○ 입원 ○ 외래				
B. 복막투석 유형					
○ 비자동투석(손투석)			○ 자동복막투석 (모뎀 장착: ○ 유 ○ 무)		
C. 교육 관련 사항					
1. 교육일자	년 월 일				
2. 교육자정보	2-1. 직종		○ 의사 ○ 간호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자격번호	
3. 교육회차	초기 연도			차기 연도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1회 ○ 2회 ○ 3회 ○ 4회	
4. 교육 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5. 교육상담 내용	☐ 말기신장병에 대한 이해 ☐ 복막투석에 대한 이해: 원리 및 방법 ☐ 복막투석 관리 상세: 투석액 교환 방법, 도관 관리(소독/기능 확인), 수분, 염분, 전해질, 체중 관리, 합병증 예방, 합병증 인지/발견 방법 ☐ 일상생활관리(운동, 목욕 등) ☐ 식이/영양관리 ☐ 복약지도				
6. 교육자료 (리플렛, 슬라이드, 동영상 등) 제공 여부	○ 제공 ○ 미 제공				
7. 교육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별지 제3호 서식]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 해당 항목에 ☒ 표기 및 내용 기입 ※ ○: 선택,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추가입력 필요
--	--

A. 대상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일자	
B. 복막투석 유형			
○ 비자동투석(손투석)		○ 자동복막투석 (모뎀 장착: ○ 유 ○ 무)	
C. 점검사항			
1. 시행일자	년 월 일		
2. 관리자정보	2-1. 직종	○ 의사 ○ 간호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자격번호
3. 관리방법	☐ 전화 ☐ 문자		
4. 관리횟수	○ 1회 ○ 2회 ○ 3회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이상 ○ 4회 ○ 5회 ○ 6회 이상		
5. 관리제공 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6. 관리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7. 임상정보	• 체중(kg) • 평균 제수량(cc) • 특이사항 ()		
8. 복막투석을 위한 위생 및 환경관리	○ 양호 ○ 이상 ☐ 특이사항 ()		
9. 투석, 도관 관리 및 환자 상태	• 투석액 주입 상태 ○ 양호 ○ 저류시간 부족 ☐ 특이사항 () • 투석액 배액 상태 ○ 양호 ○ 제수량 부족 ☐ 특이사항 () • 투석액 상태 ○ 양호 ○ 이상 ☐ 특이사항 ()		

	• 도관 부위 이상 여부 ☐ 양호 ☐ 발적 ☐ 진물 ☐ 특이사항 (_____) • 환자 상태 ☐ 호흡곤란 ☐ 복통 ☐ 변비 ☐ 부종 ☐ 소변량 감소 ☐ 소양증 ☐ 수면장애 ☐ 오심/구토
10. 서비스 제공내용 (복수 선택 가능)	☐ 질병에 대한 포괄적 관리 ☐ 체중/제수량 수치와 측정방법 관리 ☐ 식이관리 ☐ 운동요법 ☐ 합병증 예방관리 ☐ 기기 사용법/비자동투석방법(손투석) 및 주의사항 ☐ 복약지도
11. 보고 (의사)	☐ 유 ☐ 무
12. 내원 지시	☐ 외래 ☐ 응급실 ☐ 없음 ☐ 기타 (_____)
13. 환자 순응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14. 기타 기재사항	(Text 입력 ※ 필수 입력사항 아님, 한 달간 시행한 환자관리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4호 서식]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기관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메일주소	

본 의료기관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참여 약정서를 첨부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진찰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환자용)

환자성명		생년월일	
------	--	------	--

본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기관 OO 병원장 귀하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질병치료, 진행상황 등에 대한 교육 상담을 받으시거나,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상담 등 환자관리를 제공합니다. 환자는 교육상담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비대면 상담 등 환자관리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은 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해 제공되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자용)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기관	시범사업 시행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 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u>교육상담료 I·II, 환자관리료 점검서 내용(교육사항, 점검사항, 임상수치, 복막투석을 위한 위생 및 환경관리, 투석, 도관관리 및 환자상태, 환자순응도, 서비스 제공내용)</u>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u>5년</u>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u>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u>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 내용 심사 및 평가, 연구용역
제3자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u>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u>
	민감정보	<u>교육상담료 I·II, 환자관리료 점검서 내용(교육사항, 점검사항, 임상수치, 복막투석을 위한 위생 및 환경관리, 투석, 도관관리 및 환자상태, 환자순응도, 서비스 제공내용)</u>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u>5년</u>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마. 고유식별정보 처리고지사항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개인정보 처리사유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처리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바.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등 동의여부

본인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제출 요망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민감 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기관 ○○ 병원장 귀하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시범사업 대상기관 관련

Q1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시범사업 대상 환자 관련

Q2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환자 모두 해당됩니다.(보훈환자 제외)

Q3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요?

- 만성 신장병 5기(질병코드: N18.5) 환자로 재택관리가 필요하여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자입니다.
- 단,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입소)중인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수가 산정기준 관련

Q4 교육상담료의 초기 연도, 차기 연도 기준은?

○ 환자별 시범사업 참여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별지 제6호 서식]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환자용) 작성일

예) 2020년 3월 6일 시범사업 참여한 환자의 경우

구분	초기 연도	차기 연도
일자	2020.3.6.~2021.3.5.	2021.3.6.~2022.3.5.

Q5 교육상담료 I은 최대 몇 회까지 산정가능 한가요?

○ 교육상담료 I은 환자당 초기 연도에는 4회 이내, 차기 연도부터는 연간 2회 이내(일 최대 1회)로 산정 가능하며, 초기 연도 4회 이내 이루어지는 교육 횟수에는 투석유형의 미확정 시 이루어지는 교육횟수 2회 이내를 포함합니다.

Q6 교육상담료 II는 최대 몇 회까지 산정가능한가요?

○ 교육상담료 II는 환자당 초기 연도에는 6회 이내, 차기 연도부터는 연간 4회 (일 최대 1회)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Q7 교육상담료 I과 교육상담료 II를 동일한 날짜에 산정가능 한가요?

○ 의사가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질환 및 치료과정 설명 등을 위하여 15분 이상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상담을 별도로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 I, II를 모두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교육상담료 I과 교육상담료 II를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6'을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Q8 교육상담료 I, II는 진찰료 등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별도의 진찰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한 행위나 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도 산정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실시한 행위나 치료재료, 원외처방내역 등에 대한 수가(비시범사업 내역)는 교육상담료 I, II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Q9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환자관리료는 진료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질환관리 서비스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업무 등을 포함한 전화, 문자 등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별로 산정하는 수가입니다.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환자별 마지막 실시기록한 일자를 작성합니다.

Q10 대면으로 환자관리 후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환자관리료는 재택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이 원칙이므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서비스를 제공 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1 입원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수가산정이 가능한가요?

- 교육상담료 I의 경우 외래환자에게만 적용되나, 교육상담료 II의 경우 외래, 입원환자에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Q12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사업 시작일 이후 대상자에게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되는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와 그 외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 이외 진찰, 검사, 투약 등과 같은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4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 중 교육상담료Ⅰ, 교육상담료Ⅱ는 해당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환자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입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4,5에 한함)」에 의거 100분의 10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 이외 별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의거 법정 본인부담률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 시범사업 실시인력 관련

Q15

교육상담료Ⅰ의 실시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를 말하며, 시범기관 소속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변경)신고서 상, 신고된 의사에 한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Q16 교육상담료 II와 환자관리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말하며, 시범기관 소속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변경)신고서 상, 신고된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 타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Q17 인력현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인력 현황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 현황 신고 공통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의사	의(약/조산)사 신고→근무병동→'복막투석 재택관리팀' 등록 *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등록 가능
간호사	간호인력 신고→근무병동→'복막투석 재택관리팀' 등록

■ 청구방법 관련

Q18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을 분리청구해야 하나요?

-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16'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입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이 모두 발생한 환자의 청구명세서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명세서일련번호*	총내원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
(명세서 1) 비시범사업 명세서	00050	1	20210901
(명세서 2) 시범사업 명세서	00051	0	20210901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19

입원 중인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게 교육상담 II를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 II를 시행한 경우^{예1)}, 최초 교육상담을 시작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기재하고 교육상담 II를 시행한 횟수 및 일수를 일투 및 총투에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되지 않은 날짜에 교육상담 II를 시행한 경우^{예2)}, 각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하여 입원 명세서에 분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1) 입원 중인 환자에게 9월 1일부터 3일간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을 각 1회씩 총 3회 시행한 경우

구 분	일 반 내 역		상 병 내 역	진 료 내 역	
	입원 일수	당월 요양급여일수	당월 요양개시일	1일 실시횟수	총 실시일수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0	3	20210901	1	3

예2) 입원 중인 환자에게 9월 3일부터 연속되지 않은 날짜로 교육상담을 각 1회씩 총 3회 시행한 경우

구 분		일 반 내 역			상 병 내 역	진 료 내 역		
		명세서 일련번호*	입원 일수	당월요양 급여일수	당월 요양개시일	코드	1일 실시횟수	총 실시일수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명세서 1)	00051	0	1	20210903	IB520	1	1
	(명세서 2)	00052	0	1	20210907	IB520	1	1
	(명세서 3)	00053	0	1	20210910	IB520	1	1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20

교육상담이나 비대면 환자관리를 시행한 후 당일에 환자가 입원하게 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교육상담) 외래에서 교육상담을 시행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1) 외래에서 교육상담 I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입원일수	당월 요양급여일수	당월 요양개시일	코드	1일 실시횟수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0	1	20210901	IB510	1

예2) 외래에서 교육상담 I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하여 교육상담 II 시행한 경우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입원일수	당월 요양급여일수	당월 요양개시일	코드	1일 실시횟수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0	1	20210901	IB510	1
				IB520	1

- (환자관리)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환자 관리료 수가는 외래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후, 당일 입원한 환자에게 교육상담 II를 시행한 경우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총 내원일수	내원일자	코드	1일 실시횟수
(명세서 1) 외래 명세서 분리청구	1	20210901	IB530	1
(명세서 2)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0	20210901	IB520	1

Q21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 청구 시 특정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6'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환자가 특정기호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기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Q22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가 신포괄수가 대상기관에 입원 시, 시범수가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 시범기관에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하는 경우 시범사업 내역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분리하여 별도로 추가청구*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16'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관련 수가는 전액 비포괄 항목으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 추가청구 구분 코드: 2

Q23

이중 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이외의 진료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 (4)을 기재하여 신포괄수가를 적용 후 원청구 하고, 재택관리 시범사업 진료 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4)을 삭제하여 추가청구 합니다.

Q24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로 명시된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 동안 청구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Q25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명세서가 지급불능 처리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시스템 관련

Q26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Q27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시범사업 서식관리→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Q28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시범사업 서식관리→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Q29 임시저장이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임시저장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 완료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출 관련

Q30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의 경우 수가를 산정할 때마다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시범사업 최초 참여 시
1회만 작성합니다.